

의안 번호	제3603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4월 04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4월 1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보훈회관 목적 및 명칭·위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보훈회관 용도 및 기능을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(안 제5조)
- 라. 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, 안 제7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